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1111호 2015. 08. 31.(월)

## 차 례

###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2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2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 3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29호 2015년 인천광역시 서구 재정공시[결산] -- 4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17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입안(안) 공고·열람 ----- 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181호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입법 예고 ----- 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189호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입법 예고 ----- 19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26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08. 28.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건지로 136-1외 2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08. 28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5-08-28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3-513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136-1 (가좌동)	2009-09-22	이 도로의 종점 부근이 옛 건지골을 지나므로 명명(건지는 옛날 이 지역에 있던 마른 연못)	
2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3-510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138 (가좌동)	2009-09-22	이 도로의 종점 부근이 옛 건지골을 지나므로 명명(건지는 옛날 이 지역에 있던 마른 연못)	
3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3-511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138-1 (가좌동)	2009-09-22	이 도로의 종점 부근이 옛 건지골을 지나므로 명명(건지는 옛날 이 지역에 있던 마른 연못)	
4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3-512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138-2 (가좌동)	2009-09-22	이 도로의 종점 부근이 옛 건지골을 지나므로 명명(건지는 옛날 이 지역에 있던 마른 연못)	
5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796-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744번4길 4-2 (불로동)	2008-12-31	검단로744번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네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766-3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755번길 19 (불로동)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5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766-2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755번길 21 (불로동)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5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78-9	인천광역시 서구 담지로104번길 11 (연희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9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88-16	인천광역시 서구 담지로22번길 10 (연희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10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34-7	인천광역시 서구 도담5로 79 (오류동)	2012-10-25	도담로에서 다섯번째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37-2	인천광역시 서구 도담8로 21 (오류동, (주)에스앤테크)	2012-10-25	도담로에서 여덟번째 분기되는 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765-6	인천광역시 서구 도요지로42번길 45-7 (경서동)	2009-09-22	도요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838-6	인천광역시 서구 드림로 408-22 (당하동)	2009-07-10	수도권매립지내 조성예정인 드림파크와 연결되어 있는 도로	
14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81-121	인천광역시 서구 보석로18번안길 10 (경서동)	2013-07-30	보석로18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81-114	인천광역시 서구 보석로18번안길 31 (경서동)	2013-07-30	보석로18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113	인천광역시 서구 북향로32번길 29-17 (원창동)	2013-12-02	북향로 시작지점에서 약 3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7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199-58	인천광역시 서구 새오개로35번길 7 (석남동)	2009-09-22	새오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8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07-22	인천광역시 서구 옷우물로26번길 3 (석남동, 체니스)	2009-09-22	옷우물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9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21-11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839번안길 7 (원당동)	2008-12-31	원당대로839번의 안쪽으로 분기되어있는 도로	
20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21-2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839번안길 7-1 (원당동)	2008-12-31	원당대로839번의 안쪽으로 분기되어있는 도로	
21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0-12	인천광역시 서구 원석로 137 (원창동)	2009-09-22	원창동과 석남동의 머릿글자를 따 명명	
22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0-11	인천광역시 서구 원석로 139 (원창동)	2009-09-22	원창동과 석남동의 머릿글자를 따 명명	
23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0-40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89번길 14-18 (원창동)	2009-09-22	원창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4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74-2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4로 10 (오류동)	2012-10-25	우리구 해넘이 명소 정서진 명칭을 반영한 정서진로에서 분기되는 네번째 도로	
25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43-7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49번길 21-1 (경서동)	2012-03-30	청라한울로의 시작점에서 4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6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271외 1필지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 244-28	2008-12-31	고산후라는 자연부락의 이름을 따 명명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5-127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5. 08. 28.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도요지로42번길 45-7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경서동 765-6	도요지로42번길 45-7	2015.08.03.	건물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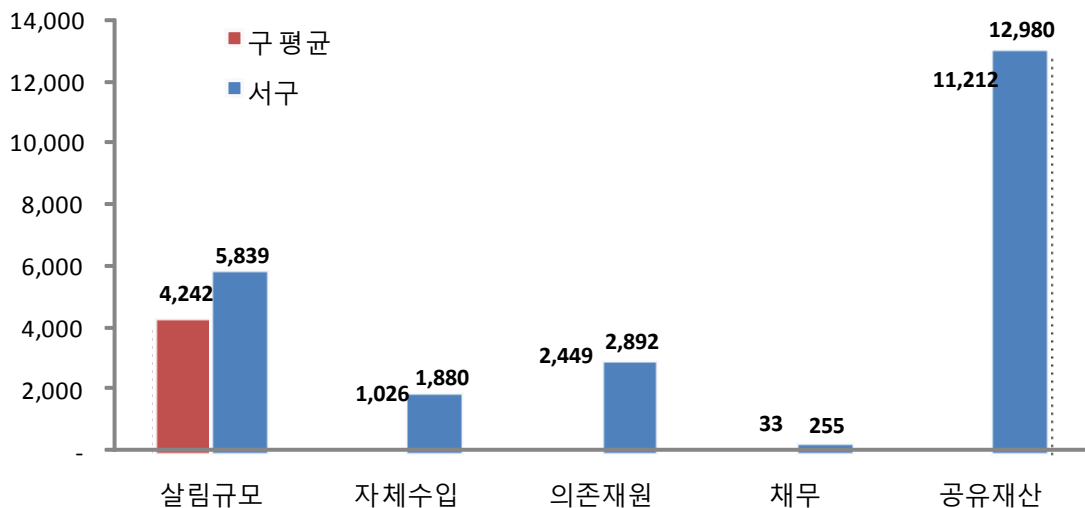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5 - 129호

## 2015년 인천광역시 서구 재정공시(결산)

- ◆ 우리 서구의 2014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의존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839억원으로, 전년대비 234억원(4.17%) 이 증가하였습니다.
  -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880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29만원입니다.
  -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892억원입니다.
  -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67억원입니다.
  
- ◆ 2014년말 기준으로 우리 서구의 채무는 255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51천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14년도에 서구 검암동 254-11외 211건(532억원)을 취득하고, 249건(310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1조 2,980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 우리 서구를 동종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종자치단체 살림살이 규모비교**(단위: 억원)



- ◆ 우리 서구의 2014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 (4,242억원) 보다 1,597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 (1,026억원)보다 854억원이 많으며,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 (2,449억원)보다 443억원 많습니다.
  -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 (33억원)보다 222억원 많고, 서구의 1인당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 (10천원)보다 41천원 많습니다.
  - 공유재산은 동종단체 평균액 (1조 1,212억원)과 비교하여 1,768억원이 많습니다.
  
- ◆ 우리 서구의 '14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34.46%이며 (전국 평균 25.09%),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43% (전국 평균 43.11%)입니다.
  
- ◆ 우리 서구의 2014년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5억원의 흑자입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서구의 재정은 동종단체에 비해 재정자립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재정자주도는 동종평균보다 조금 낮은 편입니다. 이는 지방세 수입의 증가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높아졌으며, 자원조정교부금의 감소와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에서 보듯이 넓은 관할 면적(137.12km<sup>2</sup>)과 인구의 증가, 청라국제도시 등 각종 국·시책 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따른 국·시비보조사업의 확대로 예산규모가 증가하여 재정자주도는 감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구는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예상되며, 대규모 국·시책 사업이 추진 중인 신흥개발도시로써 세입의 증가는 물론 도로, 공원, 녹지 등 필수 기반시설의 세출 수요 또한 높으며, 신규 행정수요 및 문화·복지시설 건립 등 신규 시설수요와 사회복지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재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계획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서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eo.incheon.kr/seo/icsg4/sub04/001/sub01\\_02/](http://www.seo.incheon.kr/seo/icsg4/sub04/001/sub01_02/))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실 예산팀(☎560-4053)으로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주민의견수렴 게시판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2015. 8. 3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 - 1176호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입안(안) 공고·열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8. 31.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1. 주요 입안내용

가. 시 설 명 :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로1-81호선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일원

○ 내 용 : 미집행구간에 대한 선형 및 종점변경

나. 입안사유

○ 미개설도로의 선형변경을 통해 장기미집행시설 해소와 공업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1)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81	20	국지 도로	1,020	광로2-4호선 (가좌동602-8)	광로3-9호선 (가좌동173-387)	일반 도로	-	1988.11.25 (인고 제1406호)	
변경	중로	1	81	20	국지 도로	1,190	광로2-4호선 (가좌동602-8)	광로3-9호선 (가좌동173-191)	일반 도로	-		선형 및 종점변경

## 2)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중로1-81	중로1-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형 변경</li> <li>○ 연장(L) = 1,020m → 1,190m</li> <li>○ 종점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 정 : 가좌동 173-387</li> <li>- 변 경 : 가좌동 173-191</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개설도로의 선형변경을 통해 장기 미집행시설 해소와 공업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li> </ul>

## 2.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3.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1)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서구청 도시개발과 (☎ 032-560-4763)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1181호

## 입 법 예 고 문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부개정함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 8. 31.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개정이유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하여 공정성 확보
  -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

### 3. 주요내용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시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정비

### 4. 의견제출

이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5년 9월 21일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위생과장)에게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사항 등

####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청 위생과
- 전화번호 : 032-560-4377 (FAX 560-2756)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 2. 개정이유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하여 공정성 확보
-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

## 3. 주요내용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시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정비

## 4.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 계 법 령 발 취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이 정한 영업의 종류로써 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이 정한 영업의 종류로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및 법 제8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 관리시설 및 위생 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 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용자사업
6.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7.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8.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용자업무에 관한 사항은 구금고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금을 관리 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2장 식품진흥기금 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제7조(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인천

- 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식품진흥기금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식품위생관련 담당 과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관련자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진흥기금 담당이 된다.
- 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식품위생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그 밖에 개인사정에 따라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용자대상자 및 용자금액
4.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3장 식품진흥기금의 관리·운용

**제15조(용자대상)** 식품진흥기금의 용자대상은 구 관내에서 법 시행령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6조(용자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기금의 용자신청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용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업소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자대상자를 선정하여 구금고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용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기 용자 대출업소로서 용자금 상환잔액이 있을 때
2. 휴·폐업 중인 업소 또는 6개월 이내에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④ 구금고는 구청장이 통보한 용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⑤ 대출절차는 구금고가 정하는 금융기관 약정을 따른다.

**제1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 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용자지원사항 보고 등)** ① 구금고는 용자지원상황, 그 밖의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금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구금고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9조(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으로 한다.

#### 제4장 보칙

**제2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금고 또는 기금을 용자받은 자에 대하여 용자금의 사용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용자금의 사용 등에 관

한 사항을 확인지도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기금 관리는 「인천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1189호

## 입 법 예 고 문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 8. 31.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치법규 정비
  -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

### 3. 주요내용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시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정비

### 4. 의견제출

이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5년 9월 21일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위생과장)에게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사항 등

####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청 위생과
- 전화번호 : 032-560-4377 (FAX 560-2756)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 2.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치법규 정비
-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

### 3. 주요내용

- 별지 서식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정비

### 4.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을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식품진흥기금”을 “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를 “제16조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위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 중 “제17조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의한”을 “따라”로 한다.

제5조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융자조건 및 융자금액”을 “제4조에 따른 기금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융자조건 및 융자금액 ”로, “의한”을 “따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를 “여신관리규정을 따른다”로 한다.

제7조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용자대상자심의서 등) 조례 제7조에 따라 간사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용자대상자심의서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회계공무원 근무기간 명세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제8호서식,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b>식 품 진 흥 기 금 용 자 신 청 서</b>																					
신 청 인	①대표자성명		②생년월일																		
	③업 소 명		④전 화 번 호																		
	⑤주소(소재지)		⑥사업자등록 번 호																		
사업체규모	⑦영업장총면적	$m^2$	⑧자 산 총 액	천원																	
대 상 업 종	⑨업 종	· 식품접객업소                      · 모범음식점 · 식품제조가공업소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업소 및 도입준비업소 · 기 타(화장실)																			
자 금 용 자 신 청 내 역	⑩실소요 금액		⑪용자신청금액	⑫ 비 율 (⑪/⑩)																	
				%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b>따라</b> 식품진흥기금 용자를 신청합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h colspan="3">신청서류확인</th></tr> <tr><td style="width: 33%;">담당자</td><td style="width: 33%;">담 당 과 장</td><td style="width: 33%;"></td></tr> <tr><td> </td><td> </td><td> </td></tr> </table>		신청서류확인			담당자	담 당 과 장					년    월    일  신청인                      (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h colspan="2">지 정 은 행</th></tr> <tr><td style="width: 50%;">은행명 (지점명)</td><td> </td></tr> <tr><td>대 출</td><td>가능, 불가</td></tr> <tr><td>확인자</td><td>(인)</td></tr> </table>		지 정 은 행		은행명 (지점명)		대 출	가능, 불가	확인자	(인)
신청서류확인																					
담당자	담 당 과 장																				
지 정 은 행																					
은행명 (지점명)																					
대 출	가능, 불가																				
확인자	(인)																				
<b>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b>																					
<b>구 비 서 류</b>	1. 시설개선용자 사업계획서 1부. 2. 시설개선 용자사업 이행확약서 1부. 3. 영업허가(신고)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1부.																				



##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용자신청업소 현지조사서				
용자신청자	성 명		<u>생년월일</u>	
	주 소		전 화 번 호	
업 소 현 황	업 소 명		허 가 번 호	
	업 종		허 가 일 자	
시 설 규 모	대 지		건 물 규 모	
	영업장면적	m <sup>2</sup>	구 조	
기타(좋은식단 실천여부등)				
조사자의견	(사업의 타당성 등 구체적 기재)			
	[첨부] 시설개선 전 사진			
<p>위와 같이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용자신청자에 대하여 현지 조사한 결과를 보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담당자 : 소속      직      성명      (인)</p> <p style="text-align: right;">담    당 : 소속      직      성명      (인)</p>				



## 【별지 제8호서식】

관리번호 제      호			
<b>식품진흥기금 용자 사후관리 카드</b>			
영업신고번호		업      종	
업    소    명		전    화    번    호	
대    표    자		<u>생    년    월    일</u>	
소    재    지			
시설규모(면적)	총면적 :      m <sup>2</sup> / (영업장:      m <sup>2</sup> , 조리장:      m <sup>2</sup> , 화장실:      m <sup>2</sup> )		
모범음식점지정	유 · 무	지    정    일	
용    자    신    청    일		신    청    금    액	
대    출    일    자		대    출    금    액	
상    환    기    간	년거치    년균등분할상환    %	용    자    용    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이행실태 점검사항			
구      분	점검일자	점검결과	점검자(직,성명)
개    선    전			
개    선    후			
금융기관명	담당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별지 제9호서식】

## 용 자 대 상 자 심 의 서

### 1. 신청업소 현황

신고번호	업종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	연락처
신청일		공사소요액	총 백만원 (* 신청액 : , 자부담 : )			

### 2. 용자대상자 선정 확인사항

시설개선용자심의내용	심의결과
1. 휴·폐업 여부	
2. 용자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퇴·변태영업행위 행정처분 여부	
3. 용자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2회이상 영업정지 행정처분 여부	
4. 용자한도액을 용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었는지 여부	

### 3. 신청서류 확인사항

신청서류	사실확인	적	부
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시설개선용자사업계획서			
3. 시설개선용자사업이행확약서			
3. 공사견적서			
4. 영업허가(신고)증사본			
5. 사업자등록증사본			

20\_\_년    월    일

심의위원장 (실·과장)    직    성명    (인)

심 의 위 원(주무담당)    직    성명    (인)

심 의 위 원(실무담당)    직    성명    (인)





# 관계법령 발췌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